

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원

판 결

사 건 2021가소 손해배상(기)
원 고

경남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담당변호사

피 고

전주시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301호 (만성동, H타워)
(송달영수인 **전종필**)

변 론 종 결 2022. 10. .
판 결 선 고 2022. 11. 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.부터 2022. 11. 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3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소 장

원 고

경남

원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

진주시

담당변호사:

(전화: 055-

이메일:

)

피 고

주소불명

손해배상(기)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